가 소방직만으로는 대처·예방에 한계가 있어, 도시방재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우선적 확보와 전 정보화 시스템구축이 긴요한 과제인바,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지난번 국지성 호우로 발생한 수재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음을 지적하고자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심 사 결 과 :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42

2001년 9월 일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30일 회부
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, 의결)
2. 제안설명의 요지
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
 가. 제안이유
  현행 박물관의 명칭을 설립주체 위주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박물관의 성격, 전시내용, 설립 및 운영주체 등을 함축하고 내·외국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 나. 주요골자
  설립주체 위주로 되어 있는 『서울특별시립박물관』의 명칭을 『서울역사박물관』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71조)
 다. 참고사항
  가) 관계법령
  《지방자치법 제105조(사업소)》
  ①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  《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(과·담당관 등의 설치)》
  ①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실장·국장·부장·과장·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 ▣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 (전문위원 : 김남중)
 ○서울시가 설치하는 대부분의 기관명에서 '시립'이라는 설립주체 중심의 명칭을 이용시민·내용중심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있어, '서울특별시립박물관'의 기관명을 '서울역사박물관'으로 개칭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이용시민 중심의 명칭 개정으로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.

【 세부사항 】

 ○우리 시가 설립 중인 동 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이나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는 국내 최초로 도시역사박물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,
 ○역사학계, 관계 전문가 등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을 고려해 볼때,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론요지 : 생 략
6. 심사결과 :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본문중 "15,340명"을 "15,446명"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중 "4,874명"을 "4,980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